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상공개가 별다른 절차 없이 진행됨

인권 문제가 고양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자 2005년부터 피의자의 인권 보호 시작: 머리에 점퍼나 모자를 씌우고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등의 신상 보호

점차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특강법 제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작

조두순의 경우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 성범죄자 e알리미를 통해 신상을 알 수 있음 >> 이것은 이미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특강법의 ‘피의자’신상공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e알리미와는 다르다.

현행법에는 얼굴 공개의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피의자가 스스로 얼굴을 가릴 경우 강제로 이를 드러나게 할 수 없음

하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 상에서 신상이 털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